

채석기간연장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채석 및 반출기간				신고 연월일 및 번호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 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m ³	m ³	m ³		
변경사항	신고기간		연장기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첨부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신고인	접수 현지조사 추가복구비 산정 담당부서	추가복구비 예치 추가복구비 예치 신고수리 결정 신고수리 신고인 담당부서